

미디어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0. 07. 30.
1차 개정 2022. 04.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 미디어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명칭) 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영문 명칭은 “Media Center”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3조(기능과 사명) 센터는 본교 교내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과 올바른 비판 정신 함양을 통하여 건학정신을 구현하고 학내 구성원 간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 강화에 기여하며 대학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위치)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제5조(사업 및 운영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규뉴스 : 학내 소식 및 학생 관련 뉴스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2. 라디오 프로그램 : 학내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영상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3. 웹진 제작 : 정규 학내 소식, 학술 및 문화 활동 보도, 기획 취재 내용 제작
4. 그 밖에 각 호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②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웹진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은 학기 중 주 1회 업데이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웹진은 연 4회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증회 제작할 수 있다.

제2장 기구 및 운영

제6조(조직) 센터에는 취재보도부, 편집부, 제작부, 글로벌제작부를 두며,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재보도부는 정규뉴스 영상 취재와 웹진 기사 작성을 담당한다.
2. 편집부는 정규뉴스 편집과 각종 영상물 편집,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한다.
3. 제작부는 라디오 프로그램, 카드 뉴스, SNS 제작을 담당한다.
4. 글로벌제작부는 정규뉴스와 웹진의 외국어 버전 제작을 담당한다.

제7조(임직원)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직원을 둔다.

1. 발행인
2. 미디어센터장
3. 조교
4. 학생임원
5. 정부원 및 수습부원

제8조(발행인) 총장은 센터의 발행물과 방송제작물의 발행인이 된다.

제9조(센터장) ① 미디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직제규정에 정한 부속기관장의 자격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발행물 및 방송제작물의 편집인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규뉴스, 라디오, 웹진의 편집, 제작 등 제반 업무 총괄
2. 미디어센터의 정규뉴스, 라디오, 웹진 등의 제작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3. 그 밖에 센터에 관한 제반사항

제10조(조교) 센터의 행정업무 및 장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1조(학생임원) ① 센터의 학생임원으로는 국장, 부국장, 취재보도부장, 편집부장, 제작부장, 글로벌제작부장을 둔다.

② 국장 및 부국장은 부장 활동을 1년 이상 한 사람으로 임명하며, 부장은 1년 이상 센터 활동을 마친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 학생 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규뉴스 및 웹진에 대한 편집, 수집, 조사, 교정 등에 관한 사항
2. 라디오 프로그램의 편성, 제작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

제12조(정부원 및 수습부원) ① 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원과 수습부원을 둘 수 있다.

② 정부원은 6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마친 수습부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수습부원은 재학생 중에서 공개 모집하며, 모집방법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취업지원처장**,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생인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수혜 및 징계

제16조(장학금) 센터 학생임원 및 정부원에게 본교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및 해직) 센터의 학생임원 및 부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 및 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명시된 기능과 사명에 위배되거나 미디어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규뉴스, 라디오, 웹진의 편집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3. 본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받은 경우

제18조(포상) 센터의 학생임원 중 재직 시 본교 또는 센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본교 규정에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9조(운영경비) 센터의 운영경비는 본교 교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0조(광고 및 기타 수익금 처리) 웹진 제작, 방송 제작과 관련된 외부광고수입금 및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학교 회계에 납부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5장 보칙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인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484, 2020.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이전의 방송국 규정, 신문사 규정, The Sang Ji Herald사 규정은 폐지한다.

② 방송국, 신문사, 영자신문사의 운영과 시설, 기자재 및 비품 등 모든 업무의 책임과 권한은 상지미디어센터에서 승계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